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컨설팅 안내



차명주식해결

■ 차명주식해결

차명주식이 존재하는 법인의 세무위험 검토 및 차명주식 회수 최적 플랜을 제시합니다.

차명주식의 문제점

1. 가업승계시 문제
2. 회사성장에 따른 주식회수시 세부담
3. 차명주식 소유자 사망시 주식지분 회수문제(세부담)

■ 명의신탁

주식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주식수는 50%+1주이다. 가업승계를 위해선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50%+1주 이상을 자녀에게 이전해야 한다.

명의신탁 이유

- 조세회피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증법 45조의 2) 증여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세부담이 무겁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명의자(납세자)에게 있다. 과세당국 및 다수의 판례에서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직접 승계인에게 이전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 증여하는 경우 명의자가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 이전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통 45의 2). 가업승계의 상황이라면 실질소유자에게는 승계인에게 증여해야 할 또 다른 주식이 있을 것이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자기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승계인은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실질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향후 증여받는 것과 합산과세 되지 않아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자 명의로 취득한 때가 취득일이 된다(서면 4팀2370-2005.11.30)

준비

- 세무당국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음을 인정받도록 대비하고 조세회피로 의심될 일을 벌이지 않는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양도로 승계인이 이전 받는다. (승계인은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확보한다)
- 명의신탁주식을 소각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불균등 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상증법 39조의 2,42)

출처: 가업승계의 비밀